

#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상업시설 계약자 유의사항



※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## ■ 일반 유의사항

- 본 건물 취득 시에는 4.6% 취득세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(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.
- 본 모임규칙의 제반 내용, 건물주택 및 분양용 홍보물은 향후 인-허가 내용 및 실시공사다소 변경될 수 있음.
- 본 판매시설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, 그 내용을 분양 받는 자 전원에게 알릴.
- 중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.
- 상부에 대한 관리운영은 입주 후 상가 자치관리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계약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기로 함.
-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관련된 및 판매시설 건축 설계구조에 적합하고 사용 가능한 용도로 분양 호실을 사용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 및 건축 설계구조로 인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동일 소유자(동업 포함)의 입주 중목에 의한 합산 면적에 따라 입주 가능 층높이 제한 될 수 있으며, 계약 전에 면적 및 입주 가능 층수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.
- 사업주택은 일체의 입주 보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입주 시 및 입주 후 입주 중목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 간의 협의로 처리하기로 하며, 사업주택외는 일체 무관함.
- 소방관련 법령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하여 입주 입주 제한 및 입주 시 피난 출몰민 중절에 따른 전용면적 내 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영업용 위한 시설공사 및 입점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, 분양대금 완납 후 입주증(공공회사 발행)을 교부받아야 가능함.
-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(사업주택)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함.
-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입주 일과 관계없이 미 준공 및 공부 미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계약일 이후 계약자의 주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택에 서면(주민등록등본 등)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 통보 두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택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변경된 각종 세금 관련 문제는 계약자 세금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, 그에 따른 불이익의 발생 시 시행자, 시공자 및 입주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사업주택의 담당 업무 외에 소비자는 별도의 인원을 제기할 수 없음.
- 계약체결 후 해약과제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.
- 환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, 성능,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택이 인-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각종 광고 및 홍보물(건본주택, 리플렛, 전단, 홈페이지, 신문광고, 영상물 등) 등에 표시된 주변개발, 개발계획,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(도로, 공공장소, 학교, 지하철, 차도, 하천, 광장, 공원, 녹지 등)의 조성계획(예정사항)은 각 시행주택가 계획,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택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광도도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,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주택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.
-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자, 금융기관,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들 수 있음(계약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함).
- 대외 공개 및 면적은 최종 측량결과 및 하천계획관련 지구단위계획, 관련시설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외 공개 및 지적확인을 따른 대지계획장 산 처리 시 입점자는 동의하여야 함.
- 입점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20만 원의 선수금 이 부과됨.
- 부기시설을 완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한 세우서에 사업자등록(인대사업자)을 하여야 함. 계약자는 사업주택 및 시공자에게 자체입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 사본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, 사업자 미등록,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기차세 미납금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임.
- 분양 시 모형 및 건물 홍보물 등에 표현된 판매시설의 명칭 및 점포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,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에스엘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엘리베이터 콜로 복도는 공용면적으로 전용하여야 사용할 수 없음.
- 계약자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,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축/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, 필요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람.
- 공급된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체(점포관리, 영업 인허가 및 용도 변경 등)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차량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지리해야 함.
-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,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.
- 본 판매시설은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, 판매시설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, 이격거리 등의 변경 및 배치 상점 점포 개조등의 향이나 중대 따라 일조권, 조망권, 환경권, 사생활권, 영업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 신 유허구조, D/A(설비 환기구), 쓰레기보관소, 자전거보관소, 설비기, 정비반납구 등의 설치로 일조권, 조망권, 환경권, 소음피해,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공공도 및 지적 제자, 배후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자료에서 주변 환경, 개발계획,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가능하오니 관리사항 및 관계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본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- 분양 시 제1차 조망도, 모형, CG, 홍보물, 카탈로그, 평면도, 면적 지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충분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,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택의 결정은 수용하기로 하며, 제발의 의의를 사업주택에 위탁하며,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관리 상 필요시 사용의 계약자 및 이용자 판매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할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(공용계단, 지하주차장, 엘리베이터의 위치 등)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며, 이에 대하여 사업주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일링징, 경관계획(간경관포함 포함)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- 계약자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, 본 판매시설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택 및 시공자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. 하자발생의 책임소체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나 이에 유예의 바림.
- 1차 공개공사 및 광경 등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벤트 등 행사자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, 빛공해, 미관훼손, 냄새, 기타 광경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택(시행/시공사) 및 관리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권, 조망권, 소음, 진동 등으로 환경권, 영업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,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계약자는 추후 관리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, 관리규약의 변경, 폐지 또는 재설정 은 임점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라야 함.
- 외곽광고물의 경우 태풍 시 목외광고를 가리지만 본 사업의 경관심의 목외광고를 계획에 따르고, 간판,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택이 지정하는 건물관리자(시행/시공사)를 제출하여야 하며, 건물 광고 관리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.
- 본 모임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건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.
- 이 공도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분양계약서 등에 대한 지침됨.
-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
 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거래(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계약은 제외함)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.
 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  -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「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 법인 부동산등기법」 등 특별로 부여처리에 관한 규정, 등에 따라 출입국관리 소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를 발급을 마치고 그 내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.
  - 외국인토지취득신고 관련 법규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,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및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.
- 중공 전후,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(공용부분 시설물 등)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택에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, 사업승인도면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시까지 징구하여 사업주택에 제출하여야 함.

## ■ 입주 지정 및 제한

구분	해당 층	입주 지정 호실	지정 입주 표시	입주 지정 기간
판매시설	지상 5층	5001~5015호	문 고	5년
판매시설	지상 1층	B1154호	SSM(기업형 슈퍼마켓)	5년

- 판매시설 중 일부 호실은 위와 같이 입주 지정되어 있으며, 모든 계약자는 입주 지정 호실 외 타 호실에는 동일 입주으로 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입주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.
- 판매시설 지하1층 B1154호에 SSM(기업형 슈퍼마켓)이 입점할 경우, 본 판매시설 내 업종간의 무리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최초 입점시 모임규칙의 공공 대상에 해당하는 5755원은 편의시설을 제외한 1,000㎡ 미만의 식자재 마트, 대형마트 등은 입점 이 제한됨.
- 위 입주 지정 호실의 계약자는 지정 업종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호실은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입주 지정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게 있음.
- 위 입주 지정 호실을 제외한 업종 미지정 호실의 계약자가 해당 호실을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입주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,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게 있음.
-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관리단의 협의로 인하여 지정업종 제외 및 수정할 시 해당 호실의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.
- 상기 입주 지정 및 업종 지정기간은 향후 사업주택의 상가 활성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함.

## ■ 건물주택 및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

- 입점자 모집공고 및 지적 제자, 배후된 홍보물 및 영상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.
- 건본주택은 분양 후 입점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촬영, 보관할 예정임.
-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, 카탈로그,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계약자 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시설물의 위치,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.
- 건본주택의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작공 및 설계 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, 구획 면적,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- 건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상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,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며, 판매시설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, 휴게시설, 어린이놀이시설, 주민운동시설, D/A, TOP LIGHT, 쓰레기보관소, 판매시설의 설비공간, 부대시설 설치위치, 자전거보관대, 수경시설, 포장, 주변환경,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.
-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물, 분양홍보물(모형, CG, 영상물 등)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체 품질, 풍기, 색상, 온도, 제초차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물의 개시에 따라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분양홍보문 및 건물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의 상가 외관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장문프레임 규격 및 색 상, 형태, 외벽배치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, 준공 후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변경 시 소유권 이전에 관계기관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.
- 공공인쇄물, 카탈로그,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(그림), 영상물 및 건물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택 및 현장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계약 체결 시 건물주택, 배후도 평면도 등 현황계획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각종 광고 및 홍보물(건본주택 또는 분양홍보물, 리플렛, 전단, 공공안내, 홈페이지, 신문광고 등)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(도로, 공공장소, 학교, 차도, 녹지, 공공공지, 공공보행로, 보행자전용도로 등)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택가 계획,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계획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.
-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(공용계단, 지상 및 지하주차장, 엘리베이터의 용량, 속도, 탑승위치 등)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.
- 주변개발계획 및 행정기관 인계계획은 개발주택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.
-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, 대지 주변현황, 본 공사시 설치 필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 문등은 표현되지 않음.
- 본 판매시설의 홍보물에 사용되는 고덕「최대규모」에 대한 표현은 2020년 11월 평택시정 인허가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- 기타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## ■ 설계 관련 유의사항

- 상대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면적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방법전단위인 m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림.
- (설계형 환산 방법) : 공급면적(m<sup>2</sup>)×3.025 또는 공급면적(m<sup>2</sup>)×3.058
- 실용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은 인허가 과정,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, 소수정역 인허가 등 상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중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서 개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주 정산사항으로 함(단, 소수정역 이하 발행분등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등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하지 않기로 함).
- 상기 실용 계약면적에는 계단, 복도, 벽체,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, 관리실, 전기/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.
- 상기 실용 전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되며,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 상이 포함되어 있음.
- 판매시설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진입 동선이 구분되어 있음.
- 건폐율, 용적률,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.
-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, 규모,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.
- 판매시설 내외부 복도, 지붕, 테라스 등은 공용공간으로 전용할(따라출발 탁자, 의자 등 비품 설치, 영업공간 활용 등)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,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해당 입주 상가의 책임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분양용 자료(CG, 모형, 리플렛, 카탈로그 등)에 표현된 사항은 부기기 등을 연출한 이미지로 실제와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하시기 바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판매시설용 내부외부 마감, 조경물, 조경 식재, 색채 및 그래픽 디자인 등 상환경 관련 디자인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, 본 공사시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판매시설 전장고, 내부 기둥의 크기 및 위치, 칸막이벽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판매시설용 소방, 기계/전기 설비 관련 덕트, 배관/배선 등으로 인해 사용 면적 및 전장고가 축소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판매시설 내부 전장에는 소방, 기계/전기 배관, 배선 등이 노출(전장제 설치 없음) 설치되며, 이로 인해 소음일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및통해 본 공사시유로 상가 간만 사용 및 내부 조명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판매시설용 설치요금, 배기권 설치공간 등 설치공간은 조정면적 및 공동주택 저층주택 저층주택 침재 등 고려해 설치 위치가 제한되어 있으며, 임의로 설치하거나 설치면적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 및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.
- 지하1층에 쓰레기보관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,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.
- 지상2~3층에 판매시설용 배수구 및 용기 배수되어 소음,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.
- 도로 인접 및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.
- 설계변경에 따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,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,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.
- 중공 전후,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,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.
- 외관(디자인 계획(색채 포함), 경관 계획(간경관포함 포함), 옥외시설물, 조경계획 등)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.
- 조경, 공용물, 복도, 통로,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마감, 디자인, 형태, 재질,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.
- 경관조형 및 공용시설 조형, 타 판매시설 조형, 개별 판매시설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기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.
- 입점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관계법규의 규정을 적용함.
-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실,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과 업무 및 분양시설의 배치,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일조권, 조망권, 소음, 진동 등으로 주변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.

